

구 분	희망저축계좌Ⅱ	청년내일저축계좌
모집기간	5.1.(수)~5.20.(월)	5.1.(수)~5.21.(화)
접수기관	동 주민센터	동 주민센터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결정일	7.17(수) 예정	8.16.(금) 예정
통지방법	<b>문자메시지</b> 통보	
가입대상	근로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	근로하는 차상위 이하(만15세이상~만39세이하) 1984.5.1. ~ 2009.4.30. 출생 차상위 초과(만19세이상 ~ 만34세이하)의 청년 1989.5.1. ~ 2005.4.30. 출생
소득 재산 가구 기준	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	(개인 근로·사업소득) - 차상위 이하 : 월10만원 이상 - 차상위 초과 : 월50만원 초과~230만원 이하 (가구 소득인정액) - 차상위 이하 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- 차상위 초과 :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본인저축액	월 10~50만원 (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)	
정부지원 (정액)	10만원 매칭	차상위 이하 30만원 매칭 / 차상위 초과 10만원 매칭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자가진단표</li> <li>·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</li> <li>· 저축 동의서</li> <li>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/li> <li>·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</li> <li>· 신분증</li> <li>·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/li> <li>· 임대차계약서</li> <li>· 소득증빙(택 1, 4대보험 가입자 제출 불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직증명서 + 급여명세서</li> <li>- 고용임금확인서</li> <li>- 소득금액증명원</li> <li>- 원천징수영수증</li> <li>-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(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)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color: red; margin-top: 10px;">※ 근로소득 : 공적자료 적용 원칙(근로소득신고서 적용 불가)</p>	
지원조건 (모두 충족)	근로·사업활동 지속 / 3년간 10만원 이상 본인저축액 적립 자립역량강화교육(3년간 총 10시간) 이수 /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	
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 신고할 경우,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 변동 혹은 중지 가능</li> <li>·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(자활근로, 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·장애인일자리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(단, 자활근로소득은 참여 가능)</li> <li>· 청년저축계좌 가구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장이 있는 경우 : 타보장(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) 보장기준 우선 적용</li> <li>- 보장이 없는 경우 :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소득·재산만 조사 (원가구인 부, 모, 형제, 자매 등 소득·재산 조사 미실시)</li> </ul> </li> <li>· 문의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-3690</li> <li>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</li> <li>- 일원1동주민센터 02-3423-8368</li> </ul> </li> </ul>	